

# 라트비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문화, 교육,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

라트비아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는,

양국 간 존재하는 우호 관계의 강화와 문화, 교육,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의 촉진 및 발전을 희망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 제1조

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문화 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한다.

## 제2조

당사자는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이해를 목적으로 그리고 협력의 발전을 위해 특히 다음의 사항을 장려한다.

가. 배우, 작가, 화가, 음악가, 무용가와 그 밖의 문화 및 예술계 대표들의 상호 방문

나. 예술 전시회, 전통문화, 공연 및 축제의 교류

다.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, 영화, 서적, 정기간행물과 그 밖의 출판물의 교류 및 보급

라.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의 교환방문과 친선경기의 개최 및 그들 조직 간 협력, 그리고

마.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

## 제3조

각 당사자는 영화 및 비디오게임과 같은 문화상품의 공동제작과 제3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문화상품 홍보에 있어서 민간

부문으로부터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.

#### 제4조

각 당사자는 자국 내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 문화기관의 자국 영역 내 설립을 쉽게 한다. “문화기관”이라는 용어는 문화원, 학교,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조직을 포함한다.

#### 제5조

1. 당사자는 양국 방송 조직 간 협력을 장려하여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.

2. 당사자는 기자, 방송기술자 및 제작자의 상호 방문 및 드라마와 그 밖의 공연을 포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또는 공동제작을 촉진함에 있어서 협력한다.

#### 제6조

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령과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 원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.

#### 제7조

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약정을 준비할 목적으로 서로 협의한다.

#### 제8조

1. 당사자는 각자의 국가의 대학교 간 그리고 연구 및 교육 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.

2.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대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다른 쪽 국가의 문학, 역사 또는 문화와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과정 및 강좌를 개설하도록 장려한다.

#### 제9조

당사자는 교사 및 학생의 교류와 견학뿐만 아니라 각자의 국가의 일반 및 전문 교육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.

#### 제10조

1. 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각자의 국가의 영역 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기반에 따라 장학금 부여의 가능성을 검토한다.

2.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고, 각자의 국가의 권한 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, 졸업증서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.

#### 제11조

1. 당사자는 청소년 교류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조직된 체육 활동, 행사 및 축제에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상호 인식 및 이해를 촉진한다.

2. 당사자는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권한 있는 기관, 청소년 근로자의 지위와 훈련 및 청소년 정책 결정과 이행에 있어서의 비정부단체(NGO) 참여 역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국의 국내법규 및 청소년 정책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것에 합의한다.

3. 당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발전시키고, 체육의 사회적 기능 및 교육적 가치를 촉진하며, 약물복용 및 폭력과

같은 체육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체육 및 신체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향상시킨다. 협력은 특히 양국의 체육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정보 및 모범 사례의 교환을 포함한다.

4. 당사자는 체육 전문가 및 운동선수의 교류가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, 현재의 재정 여건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것에 합의한다. 각각의 행사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당사자가 사안별로 교섭한다.

#### 제12조

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.

#### 제13조

이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추가의정서를 통해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,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.

#### 제14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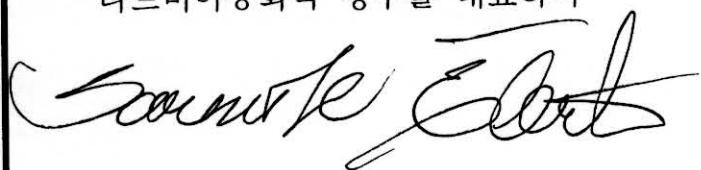
1.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.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.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.

2.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. 이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.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업 및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 
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1년 10월 19일 경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라트비아어,  
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.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 
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